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재) 설립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2020. 10.

[요약보고서]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재)설립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2020. 10.

■ 목 차 ■

I.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2
II. 타당성 검토	3
1. 혁신도시 시즌2	3
2. 사례 분석	5
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필요성 및 기능	10
4. 지역경제 파급효과	14
5. 지방재정 영향도	14
III.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15
1.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방향	15
2.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방안	16
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자립화 방안	20
IV. 재단 미설립 시 대안과 설립 및 지원조례(안)	23
1. 재단법인 형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미설립 시 대안	23
2.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안)	25
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공간의 사전 활용	27
V.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	28
1. 연구 결과	28
2. 정책 제언	31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혁신도시개발사업과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
 - 도시공간으로서의 혁신도시의 일차적인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 혁신도시 조성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 중임
- 혁신도시 조성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실무기관 필요
 -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로서 혁신도시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실무적 역할의 기관 필요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 개정되면서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기능을 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혁신도시법 제47조의3에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수행 사업, 설립 형태, 국가 등의 설치·운영 비용의 출연 및 보조 등에 관하여 규정됨에 따라 강원도에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다른 광역자치체에서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거나 연구추진을 제반 여건을 검토 중임
-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설립타당성 검토와 심의 절차에 대응하여 사전적 타당성 분석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전북혁신도시의 시즌2를 수행할 컨트롤타워로서의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자립화 운영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 타당성에 대한 기초적 연구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필요성과 역할 및 기능과 조직체계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전라북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방안 제안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향과 자립화 운영 방안

2.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전라북도 전역을 공간적 계획 범위로 함

2) 시간적 범위

- 20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 향후 10년을 시간적 계획범위로 함

3) 내용적 범위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 미설립 시 대안 등

II. 타당성 검토

1. 혁신도시 시즌2

1) 혁신도시 시즌2 개념

- 신도시에서 성숙한 도시로 완성
 - 혁신도시는 새로 조성된 도시공간이고 주민도 수도권 중심의 전북 외 타지역과 혁신도시 주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도시서비스가 충족된 정주공간의 완성 필요
-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 기반 구축
 - 혁신도시 시즌2는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관련기관, 주민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하여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혁신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여 혁신도시 조성의 성과가 지역으로 확산을 목표로 함

2)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성과

(1) 농생명·금융 중심 특화산업 활성화

-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4개 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농생명 분야 지역산업 활성화
- 농생명 교육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의 보유시설을 활용한 오픈랩 조성으로 농생명 분야 인재양성 기반 구축
-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금융서비스 활성화와 금융관련 교육 기회 제공\

(2) 지역과의 상생발전

- 혁신도시 개발에 따라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외부에 190개의 민간기업이 새롭게 입주함
- 이전공공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지역상품으로 구매(지역물품 구매액 838억 원, 우선구매율 30.2%)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인재 채용(지역인재 채용실적 '19년 말 기준 25.5%)으로 일자리 제공

-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조성한 상생 희망펀드는 공간정보 협력기업 등을 위해 운영자금 대출이자 지원함

(3) 정주여건 개선

- 계획된 신도시로서 양호한 정주공간 제공으로 계획인구 대비 92.8%('19년 말 기준)의 거주인구 달성하고, 주민이용시설(교육시설, 민원센터, 공공시설) 공급으로 정주환경 조성
- 기지제 주변을 수변공간 조성으로 하고,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키즈복합센터(전주), 공공도서관(완주)를 건립

3) 혁신도시 시즌2 과제

(1) 혁신도시 시즌2의 총괄 추진

- 혁신도시 시즌2의 발전전략별 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 다수의 이전공공기관과의 상생협회의의 통합적 운영

(2) 혁신도시 종합 관리

- 혁신도시 특화분야 관련 기업입지 정보 단일화
- 전주와 완주로 분리된 혁신도시 내 통합적 공공서비스 등 정주여건 정보 통합
- 종합병원 등 민간제공 서비스 유치와 공공의료 및 민간의료 서비스와 연계

(3) 혁신도시 맞춤형 특화서비스 제공

- 농생명과 금융 등 혁신도시 특화분야 맞춤형 종합정보 제공
- 혁신도시 특화분야 관련 산업 지원 체계 구축

(4) 혁신도시 성과를 전북 전역으로 확산 기능 담당

- 혁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즌2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북 전역을 고려한 성과 확산
- 성과 확산을 위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추진

2. 사례 분석

1)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추진 현황

- 강원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설립을 완료하고 운영 중임
- 광주·전남혁신도시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
- 대구혁신도시와 울산혁신도시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의 추진을 검토 중임
- 부산혁신도시, 충북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 제주혁신도시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함

〈표 2-1〉 지자체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추진 현황

시도	타당성조사	추진현황
강원	기 수행	'20. 1. 22 지식산업센터 재단법인 출범
광주전남	용역중	'20.8월 연구용역 착수('21.5월 완료 예정, 재단설립 및 상생기금 조성 방안)
대구	계획중	2021년도 타당성 조사 용역 계획 중(예산 신청)
울산		2021년도 타당성 조사 용역 계획 중(예산 신청)
부산	미추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타당성 정책연구 내용 최종협의 중
충북		중장기 추진 검토 중
경북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정책연구 수행, 내부 검토 중, 법 개정 이후 추진할 계획
경남		법 개정 이후 추진할 계획
제주		제주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수행 중, 중장기적으로 추진예정

2)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1) 강원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¹⁾

■ 개요

-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강원도가 출연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설립초기에는 강원도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공무원 파견 및 유관기관 협업으로 인건비 최소화('19~'21년)와 지식산업센터 운영을 통하여 2024년 이후에 자립화 예정임

■ 조직 및 운영 방안

-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단계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건립시기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로 조직 구성

〈표 2-2〉 강원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단계별 역할과 조직구성

성장단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기능	조직 구성
건립 전	1단계(형성기) 현재 ~2020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조기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중심	3팀 13명 (공무원 9 + 민간 4)
건립 후	2단계(성장기) 2021년~2022년	-1 단계의 조성이 끝나고 H/W 시설이 완공된 단계	5팀 23명 (공무원 10 + 민간 13)
	3단계(완성기) 2023년 이후	-2단계의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기틀이 조성되고, 민간 이관하는 단계	2단 5팀 (민간 23명)

*출처 : 박상규 외5(2018), 강원원주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 96쪽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수익사업을 통해 자립화
 - 이전공공기관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수행하고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위탁 운영(공공기관 통합 콜센터 운영 등)
 - 혁신도시 유치업종 관련 기업지원 사업을 수주하여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제품의 품질인증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거나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국가사업을 발굴하여 주관기관으로 참여
 - 발전기금 조성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제안함

1) 박상규 외5(2018), 강원원주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

(2) 경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계획)²⁾

■ 개요

- 재단법인 경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기본 재산 200억 원을 조성하고, 2021년 하반기 재단 출범 목표

■ 조직 및 운영 방안

- 기획관리팀, 클러스터 육성팀으로 구성하고 총 인원 9명으로 업무 담당

〈표 2-3〉 경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팀별 주요 업무

구분	인원	주요 업무
센터장	1명	법인 업무 총괄
기획관리팀	4명	혁신도시 지역발전 계획 수립,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국가 혁신클러스터 구축계획 등에 따른 전반적인 세부 추진방안 기획
클러스터 육성팀	4명	기업 창업 및 인큐베이팅 방안 기획 수행 공공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간의 거버넌스 구축 공공기관 직원 등 지역 융합프로그램 수행 통합적·효율적 도시관리·운영 시스템 인프라 구축
합계	9명	

*자료 : 이종필 외2, 2020,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부산연구원

- 연간 15~25억 원(1단계 15억 원, 2단계 25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

(3) 대구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계획)³⁾

■ 개요

-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입주하게 되는 복합혁신센터를 직접 운영

■ 조직 및 운영 방안

- 혁신도시 사업을 담당할 기획관리팀과 복합혁신센터를 운영할 운영팀으로 구성하여 기획 관리팀 5명 운영팀 25명으로 구성
-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구시, 동구청, 이전공공기관 등 재단 참여기관에서 보조금 등으로 연간 약 11억 7천여만 원의 예산 지원 필요

2) 이종필 외2, 2020,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부산연구원, 재인용

3) 최재원 외5, 2019,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대구광역시 참조

(4) 부산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계획)⁴⁾

■ 개요

- 산하기관 위탁운영 후 전환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 시 재단법인 형태로 전환(초기단계 → 안정화단계 → 발전단계)하는 단계별 운영

■ 조직 및 운영 방안

- (초기단계) 센터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실무자인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최소한의 조직 운영
- (안정화단계) 민간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채용하고, 팀장급 공무원 파견과 민간전문가 추가 채용
- (발전단계) 팀별 인력을 확충하여 현장과 부합한 조직체계로 구축

〈표 2-4〉 부산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발전단계 인력구성과 팀별 역할

구분	인원	주요 역할
센터장	1명	센터의 총괄관리
정책기획팀	4명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집행 혁신도시와 인근지역과의 연계 발전 및 협력방안 마련 혁신도시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등
운영지원팀	4명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 평가 등 복합혁신센터 시설 운영·관리 등 혁신도시 홍보 및 지역정보관리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정보지원
혁신도시육성팀	6명	혁신도시의 지역성장 거점 육성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혁신도시 내 입주한 기업 등의 활동 지원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합계	15명	

*출처 : 이종필 외2(2020), 88쪽

4) 이종필 외2, 2020,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부산연구원 참조

- 초기단계 운영재원은 부산시의 출연금 또는 위탁사업 예산으로 충당 후, 부산시와 이전공공기관이 협의·출연하여 재단 설립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혁신도시 건설로 증가된 지방세 수입으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보조하고 혁신도시상생기금을 조성하여 운영자금 지원하며 부산의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이나 지역기여사업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활용

(5) 시사점

- 센터의 업무내용 및 인력규모 등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면서 재단으로 전환
- 센터의 인력은 초기에는 공무원 파견 후, 단계적 발전에 따라 민간전문가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센터 운영 초기의 인력 비용 최소화
- 센터 설립위한 이전공공기관과 공동 출연과 지속적인 운영 보조금 필요
- 초기에는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공공시설 운영 등 자립 다각화 고려

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필요성 및 기능

1) 설립 필요성

(1)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의 컨트롤타워

- 혁신도시 개발의 목표인 혁신성장 거점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즌2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중심주체 필요
- 혁신도시 관리 책임이 있는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의 통합업무의 주도적 담당

(2) 사업추진 실무 기관

-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실무 기관 필요

(3) 네트워크 협력

- 도내 관련 기관 및 관련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협력의 주도적 역할
- 전국 혁신도시간 상호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
 - 협력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

2)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

(1) 기관 유치 및 혁신도시 육성

-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시너지를 창출할 기업, 연구기관, 혁신인력 유치를 지원함
- 이전공공기관이 보유한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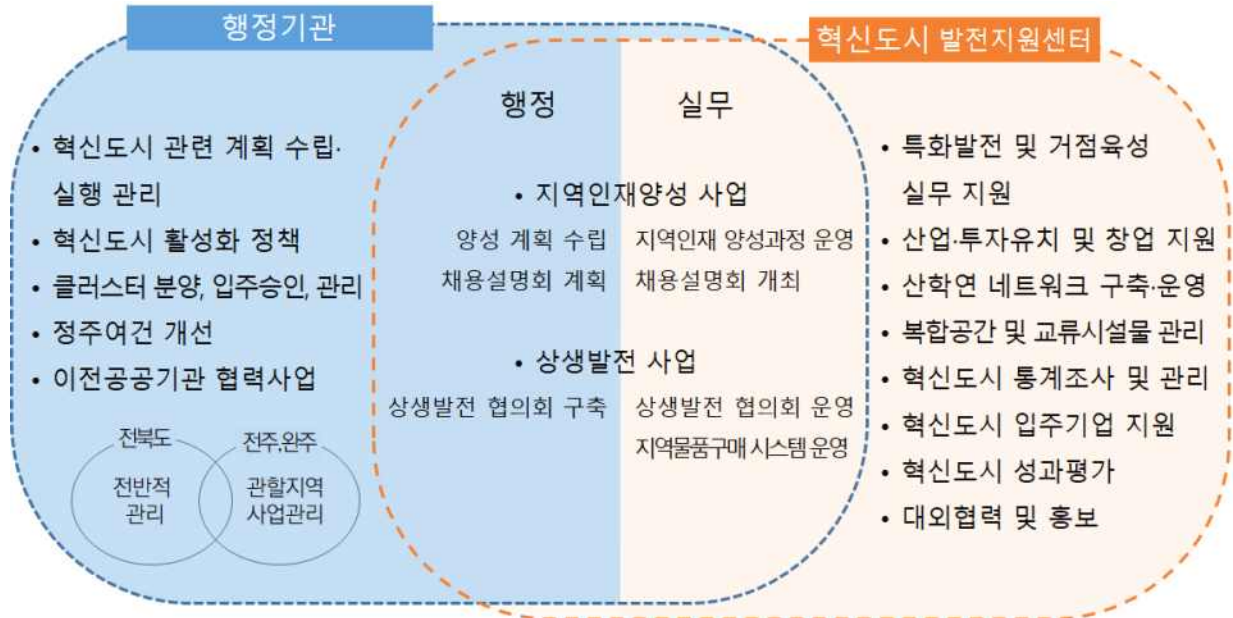
(2) 혁신도시 시즌2 완성과 성과 확산을 주도할 컨트롤타워

- '지역발전거점화 및 성과확산', '정주환경 조성', '스마트시티 구축',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4개 혁신도시 발전전략의 유기적 연계한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
-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통합과 조정하는 관리의 역할
- 혁신도시와 전북도가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상생발전 구조 마련과 성과 확산

3) 유사기관 검토

(1) 행정기관의 업무 분담

- 업무 특성상 기관별로 역할이 상이한 업무는 명확히 구분
- 업무 자체의 업무분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력적 분담



〈그림 2-1〉 행정기관과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업무 분담 체계

■ 행정기관과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기능에 맞는 운영체계 구축

- 행정기관은 혁신도시 관련 계획의 수립·실행 관리,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 클러스터 분양·입주 승인·관리, 정주여건 개선, 이전공공기관 협력사업의 업무를 담당함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 산업·투자유치 및 창업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운영, 혁신도시 통계조사 및 관리, 혁신도시 입주기업 지원, 혁신도시 성과평가, 대외협력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지역인재양성 사업과 상생발전 사업은 행정기관과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함

(2) 유사기관 기능 비교

- 기업유치 및 창업, 사업화를 위한 지원의 기능에 있어서는 유사기관 존재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유일한 기능으로 차별화

〈표 2-42〉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유사기관 기능 비교

구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연구·조사	△	△	△	×
R&D	×	○	○	×
창업지원	○	○	○	○
시설/장비대여	×	○	○	○
사업화 지원	×	○	○	○
기업유치·투자 지원	○	○	○	○
취업지원	○	×	○	○
인재양성(교육) 지원	○	△	×	○
협력연계 지원	○	×	×	△
정주여건 개선 지원	○	×	×	×
주변지역과 상생	○	×	×	×
혁신도시 통합정보 제공	○	×	×	×

* 주 : ○ 기능 있음, △ 기능 일부 있음, × 기능 없음

4)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기능

(1)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기능 및 수행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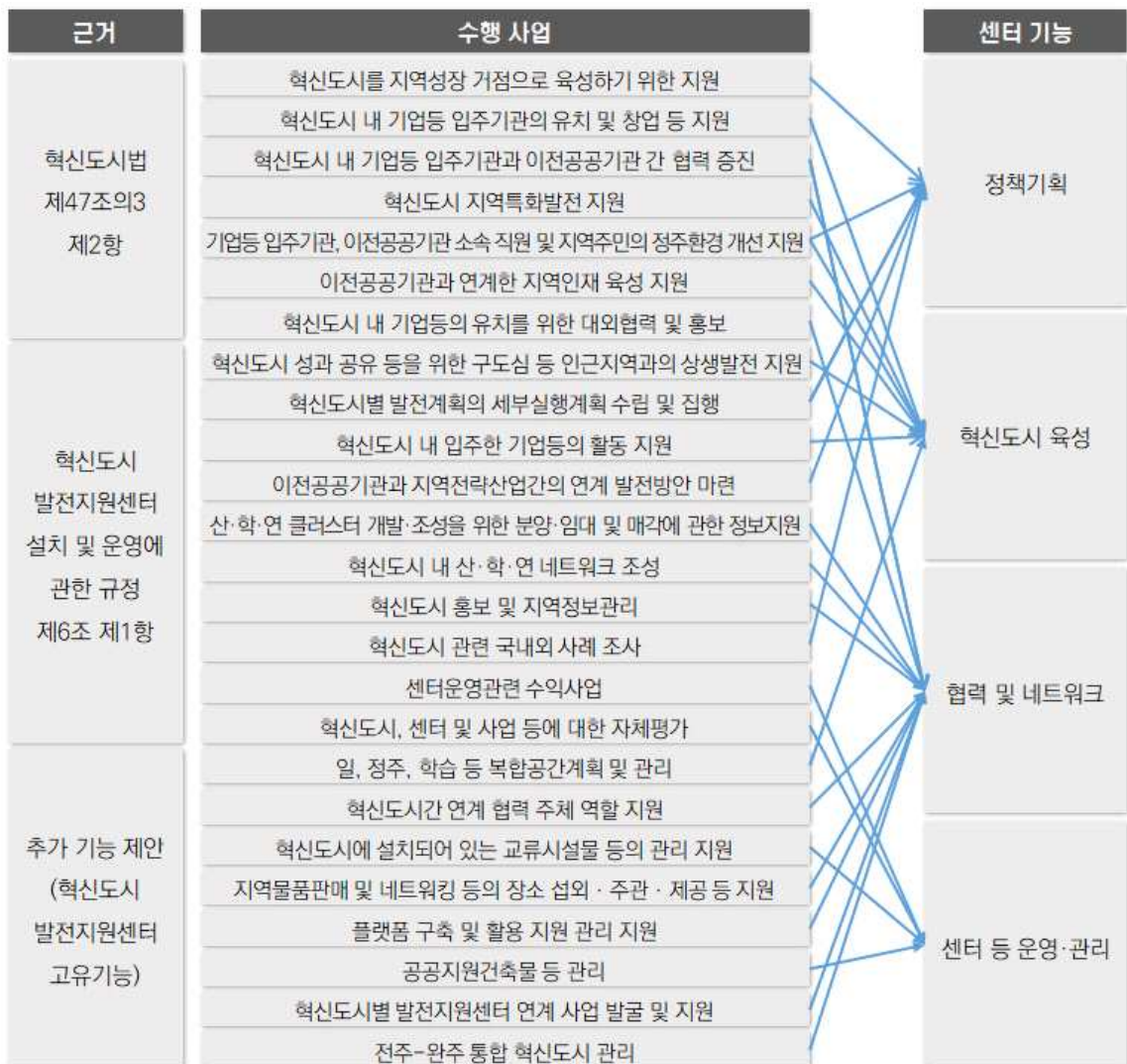
-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화발전 및 상생발전,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기능 담당
- 혁신도시 관련 법 및 규정에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담고 있지만 다소 광범위하고 특화발전에 집중되고 있음

(2)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정립

-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고유 기능 필요
- 기존의 기능에 추가적으로 시설관리, 도시공간관리, 연계협력 등의 기능 제안

(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고유사업 확대

-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과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관리 등의 고유사업 추진



자료 : 혁신도시법,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규정, 국토교통부(2020) 참조

〈그림 2-2〉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기능

4. 지역경제 파급효과

-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은 혁신도시법 47조의3 및 제34조에 따라 추진 되는 거점육성 지원, 기관간 협력 증진,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등 비영리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에 제시한 2015년 산업연관표(2019)를 활용하여 각 산업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함
-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총 9년)에 따른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4,249백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786백만 원, 취업유발효과는 18명으로 분석됨

〈표 2-6〉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지역경제 파급효과	전북	4,249	2,786	18
	기타(전북 외)	1,543	793	5
	전국	5,792	3,579	22

* 2020년 기준 현재가치로 전환 값(할인율 4.5% 적용)

5. 지방재정 영향도

-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재산으로서 1억 원, 그리고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추진 단계별로 2.2억 원에서 8.8억 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산업·중소기업 분야 지출예산의 운영 단계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운영비 비중을 보면, 2021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설립 가정하에서 1단계(2021~2023)에서는 평균적으로 0.056%이고, 2단계(2024~2026)에서는 2024년 기준 0.105%를 차지함
-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출연금 중 기본재산 출연금 1억 원은 일회성 예산이고,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총 운영비는 전라북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출연되어야 하고,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자체의 충분한 수익구조 없이 장기간 재정의 출연은 전라북도 재정 및 다른 사업의 추진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음

III.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1.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방향

1) 유사 출연기관과 차별화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유치 및 사업화 지원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고유의 기능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함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 발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종합적인 지원 역할을 위해 유사 기능을 갖는 기관의 임직원 파견을 통해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2) 단계별 안정화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기능과 규모의 단계적 확대
- 자립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의 자립 추진

3) 중장기적 접근

- 지자체 출연에 의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의 부담과 이에 따른 정책 동향
- 중장기적으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비전 마련과 추진 필요

4) 운영 자립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사업으로 혁신도시 개발로서 국가의 역할 강조
- 이전공공기관의 참여
- 공공위탁, 이전공공기관 관리, 임대공간 조성 등을 통해 재단 운영 위한 수익 창출

2.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방안

1) 설립형태 및 조직(안)

(1) 설립형태

○ 설립형태안 :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운영 후 성과평가를 통한 재단법인 설립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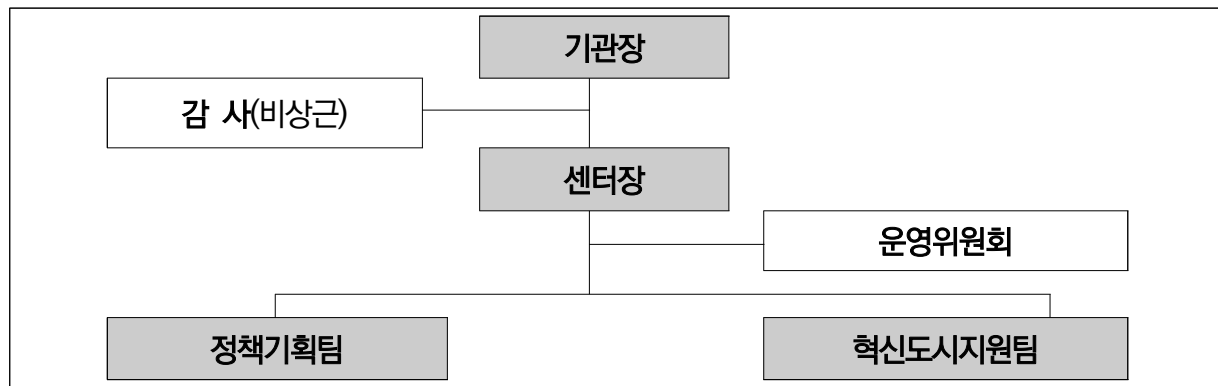
〈표 3-1〉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형태 및 추진절차

구분	준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설립 형태	-	(가칭)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도내 출연 기관 선정 후 공공위탁 방식으로 설립	재단법인으로 설립
추진 내용	혁신도시법 등 관련 제도 개정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혁신도시 기관간의 네트워크 등 핵심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	공공위탁 운영성과 분석과 혁신도시 기관 등의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재단법인으로 전환 방식 검토
주요 내용	국비 지원 등 재원방안 마련	-	도의회 상임위의 사전 협의 절차 이행 및 공공위탁 기관의 출연금 동의를 통해 출연금 형태로 예산 지원	재단법인으로 전환시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설립타당성 조사 사전 이행을 추진하고, 재단법인으로 설립 할 경우 조직운영 및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위탁 기관의 일부 직원을 파견받는 방식으로 일정기간 운영

(2) 기구 및 조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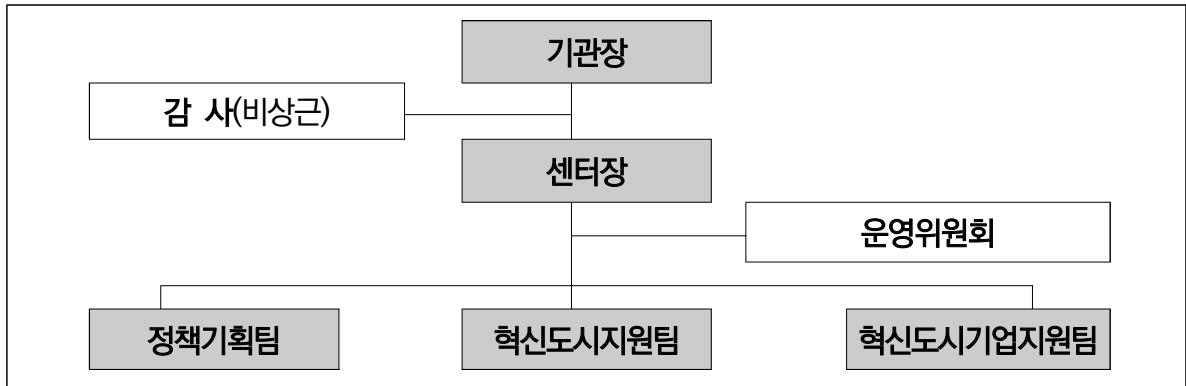
○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사업수요 분석 및 사업발굴 등을 통해 관련 예산 확보 및 필요 인력 채용 등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조직 설계를 3단계로 추진

○ 1단계 조직 설계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조직 운영 안정화 및 혁신도시 기관과의 네트워크에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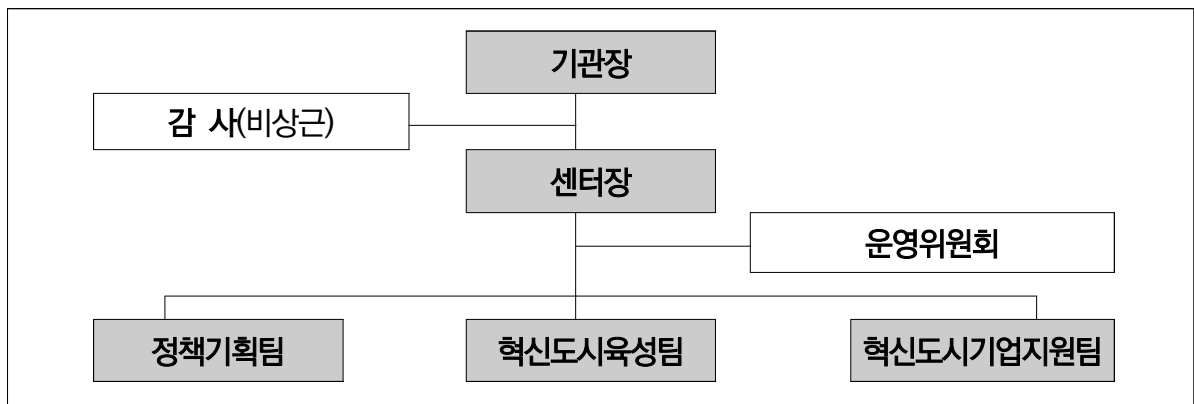
〈그림 3-1〉 설립 초기(1단계) 전북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조직도

- 2단계 조직 설계 :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협력사업 추진 및 기업유치 등 중점



〈그림 3-2〉 2단계 전북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조직도

- 3단계 조직설계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성과 확산 및 지역성장거점 육성 등 중점



〈그림 3-3〉 발전(3단계) 전북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조직도

2) 운영 계획안

(1) 인력구성

- 초기단계는 공공위탁 기관의 인력 및 공무원 파견, 민간 전문가 채용 등 최소한의 인력 운영 단계로서 조직의 인력설계는 총 6명으로 구성
- 안정화단계는 추가되는 혁신도시기업지원팀장은 위탁기관 전보를 통해 조직구성 확대
- 성장단계는 혁신도시 성과확산 및 거점육성을 위한 전문운영 체제로 전환

〈표 3-2〉 전북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단계별 인력 계획

단계	센터장	팀장	직원	합계
초기단계(1단계)	1명 (파견 1, 4급)	2명 (파견 1, 5급) (위탁기관 1)	3명 (정책기획팀 1, 혁신도시지원팀 2) ※신규채용 3	6명
안정화단계(2단계)	1명 (파견 1, 4급)	3명 (파견 1, 5급) (위탁기관 2명)	6명 (정책기획팀 2, 혁신도시지원팀 2, 혁신도시기업지원팀 2) ※신규채용 3	10명
성장단계(3단계)	1명 (채용 또는 전보)	3명 (파견 1, 전보2)	11명 (정책기획팀 3, 혁신도시육성팀 4, 혁신도시기업지원팀 4) ※신규채용 5	15명

(2) 팀별 역할

〈표 3-3〉 발전(3단계)단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인원 구성 및 주요 역할

구분	업무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업무 총괄 	
정책기획팀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 예산 및 회계, 인력채용, 시설관리 등 • 전북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기능 • 이전공공기관 연계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 이전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위원회 운영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 등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대외협력 및 홍보,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혁신도시육성팀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 관련 시설 운영·관리 등 • 이전공공기관의 연계협력 사업 발굴 및 집행 • 이전공공기관 정주환경 개선 및 정착지원 • 혁신성장 거점으로서의 혁신도시 육성 추진체 기능 • 혁신도시의 지역성장 거점 육성 •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혁신도시기업지원팀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연계 혁신도시 투자 유치 활동 • 성과 실용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도내 대학기관 및 기업과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업과 이전공공기관 공동협력 기반 연계 및 기술지원 방안 마련

(3) 소요예산 및 출연금 규모 추정

- 1단계 조직 및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출연금 규모가 217,928,8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2단계 465,785,119원이, 3단계는 880,005,296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표 3-4〉 단계별 출연금 추정

(단위 : 원)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인원	인건비	인원	인건비	인원	인건비
센터장	1	-	1	-	1	47,310,000
팀장	2	-	3	-	3	-
직원	3	60,328,800	6	136,451,789	11	263,695,301
총 인건비	3	60,328,800	6	136,451,789	15	311,005,301
수당	6	36,000,000	10	60,000,000	15	90,000,000
여비	6	21,600,000	10	36,000,000	15	54,000,000
시설 및 차량관리비, 기타운영비	6	50,000,000	10	83,333,330	15	124,999,995
사업비	-	50,000,000	-	150,000,000	-	300,000,000
출연금 총계		217,928,800		465,785,119		880,005,296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60,328,800원 = 1,675,800원 × 12월 × 3명 ('20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8급2등급1호봉기준) • 수당 : 36,000,000원 = 50만원 × 6명 × 12월 (월 50만원적용) • 여비 : 21,600,000원 = 월 30만원 × 6명 × 12월 • 시설 및 차량관리비, 기타운영비 등 : 50,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136,451,789원 - 3명(기존) : 2,056,100원 × 12월 × 3명 × 2.8%(공무원 '20인상률적용) = 76,122,989원 ('20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7급3등급3호봉기준, 2단계 직원채용은 3년후 적용 설정) - 3명(신규) 인건비 1,675,800원 × 12월 × 3명 = 60,328,800원 • 수당 : 60,000,000원 = 50만원 × 10명 × 12월 (월 50만원적용) • 여비 : 36,000,000원 = 월 30만원 × 10 × 12월 • 시설 및 차량관리비, 기타운영비 등 : 83,333,330원(1인당 8,333,333원으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311,005,301 - 1명(센터장) 47,310,000원(4급 10호봉기준, '20년공무원봉급표적용) 3,942,500 × 12월 = 47,310,000원 - 3명(6년경력): 2,351,500원 × 12월 × 3명 × 2.8% = 87,024,312원 ('20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7급3등급6호봉기준, 3단계 직원채용은 6년후 적용 설정) - 3명(신규채용후 3년경력) : 2,056,100원 × 12월 × 3명 × 2.8% = 76,122,989원 ('20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8급2등급3호봉기준, 2단계 직원채용은 3년후 적용 설정) - 5명(신규) 인건비 1,675,800원 × 12월 × 5명 = 100,548,000원 • 수당 : 90,000,000원 50만원 × 15명 × 12월(월 50만원적용) • 여비 : 54,000,000원 = 월 30만원 × 15명 × 12월 • 시설 및 차량관리비, 기타운영비 등 : 124,999,995원 (1인당 8,333,333원으로 추정) 	

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자립화 방안

1)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이 공동설립

- 지자체-이전공공기관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공동 설립
 -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과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공동설립자로 참여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설치하고,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혁신도시 발전과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운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비용의 공동 출연
 - 테크노파크의 경우에도 정부, 지자체, 민간이 재단설립 비용을 분담함(운영모 2018, 38)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와 관계된 기관이 출연금을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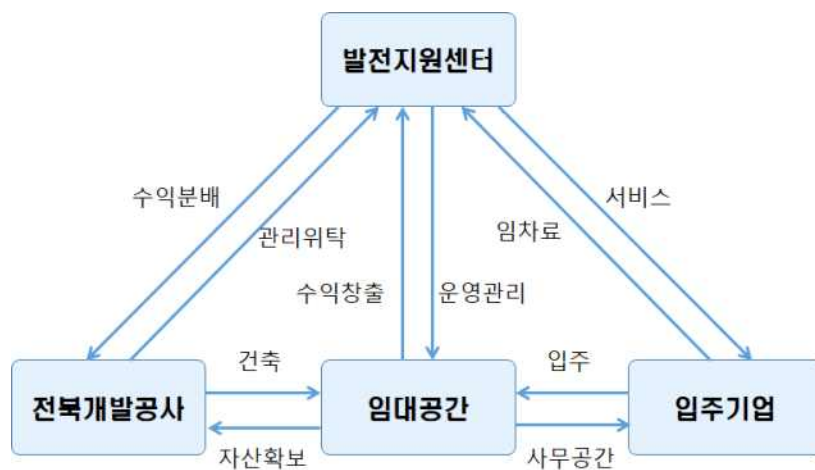
〈표 3-5〉 출연 비율 예시

기관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 사 한국전기안전공 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금융기 관 등 민간기 업
출연 비율	30%	20% (각 10)	20%	20%	10%

2) 임대공간 조성으로 임대수입 활용

- 입주기업을 위한 업무공간 조성
 - 금융도시 조성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관련된 자산관리 및 운용 회사가 전북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에 입주하게 되고, 국토정보공사나 전기안전공사 등의 이전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들도 입주하게 될 것이므로 이들을 위한 입주공간이 필요하게 됨
 - 이전공공기관 연관기업, 기업지원서비스업체, 창업기업(Start-Up), 벤처기업, 대학연구소(Lab), 기타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업무공간을 조성하여 임대 활용

- 전북개발공사의 개발사업으로 임대공간을 건축하고 운영관리 수익 공유
 - 전북개발공사가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임대공간을 위한 오피스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수요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추진
 - 전북개발공사는 혁신도시 내 분양되지 않은 부지나 혁신도시 인근 만성지구 또는 주변지역 부지를 확보하여 임대건축물 건축하고,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이를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 수행
 -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임대
 - 임대수익은 전북개발공사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분배하도록 함



〈그림 3-4〉 임대공간 운영관리 체계

3) 공공시설 관리사업 위탁

- 혁신도시 공공시설 관리의 일원화
 - 전주시는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있으나, 완주군은 공공시설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군청이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음
 - 혁신도시가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행정구역은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혁신도시 전체의 공공시설을 통합하여 시설관리 및 시설이용에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여 수익공간 운영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공공시설 내에 수영장, 축구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이용료와 편의시설로서 북카페, 키즈룸, 식당, 매점, 행사공간 등의 임대 및 운영으로 수익 창출
 - 혁신도시와 인근지역의 공용주차장, 공공시설 등의 관리위탁도 가능하도록 함

4) 자립운영 위한 국가 단위 제도 개선 제안

- 국토교통부가 출연·출자하여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에 의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국토교통부(2020) 참고)
 - 혁신도시가 입지한 지자체에서 10% 이상의 지분으로 출연·출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 설립함
 - 설립 검토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1차 협의를 거친 후,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설립가능 함
 - 혁신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출연·출자 지분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만으로 설립할 수 있어 신속하여 효율적으로 추진 가능함
 - 혁신도시법 제47조의3 제4항에 따라 국가(중앙정부)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를 출연·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출연함으로써 관할 행정청인 국토부 허가에 따른 재단설립의 용이성 확보와 자립화 제고
-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강화(국토교통부(2020) 참고)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중앙정부의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과정의 절차 간소화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출연금과 보조금의 지원하도록 함
 -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어 유명무실화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혁신도시계정’을 신설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균특회계의 혁신도시계정에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국토부가 공모사업 형태로 전국 혁신도시에 재정 지원
 - 전국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공모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형태로 재정 지원
 -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수행 사업 중 하나인 혁신도시 특화발전지원 사업을 공모하여 2~3년에 걸쳐 전국 혁신도시에 사업비용 지원

IV. 재단 미설립 시 대안과 설립 및 지원조례(안)

1. 재단법인 형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미설립 시 대안

1) 지역혁신클러스터 오픈랩 연계

-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으로 운영 중인 오픈랩에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유사업무 일부를 담당하고 있음
 -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북테크노파크, 한국농수산대학,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참여하여 전북혁신도시 내에서 ‘스마트 농생명 오픈랩’을 운영 중임
 - 스마트 농생명 오픈랩은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 혁신기관 간의 소통을 위한 단일창구로서 역할을 함
 - 또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역량과 기술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제고할 수 있는 혁신공간을 제공함
 - 또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연구장비와 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이용한 시제품을 제작하고 성능을 평가하며,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와 소비자 테스트 마케팅,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전북혁신도시 오픈랩에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
 - 스마트 농생명 오픈랩에서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업무 중 공공기관연계 협의체 등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정보교류, 기업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특히, 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업무이므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업무와 일치함
 - 기존 업무에 추가하여 특화발전 실무 지원, 창업 지원 업무는 이전공공기관과의 기존 협력영역을 확장하여 추진하고, 산업·투자유치, 혁신도시 관리 등의 업무는 기존 행정기관과 협력을 통해 업무 분담

2) 기존 조직(기관)을 활용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업무 역할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만의 고유한 기능의 추가와 전문조직 및 인력 구성
 - 유사기능은 기관의 전문적 역량을 그대로 활용하되, 혁신도시 관련 업무 강화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고유기능을 담당할 별도의 전문조직 구성 및 전문인력 배치
 - 기존 기관을 활용한 경우에는 기존의 설립목적에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함
- 기존의 조직(기관)을 활용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하면 기능중복 방지와 안정적인 운영의 장점을 가짐(국토교통부(2020) 참조)
 - 기존의 혁신거점조직을 활용한 설립방안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와의 기능상의 유사 및 중복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그러나, 기존 조직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협업할 필요가 있고,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자체의 고유한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또한, 지자체가 설립한 조직을 활용할 경우에는 국토부와의 연계가 약할 수 있으며, 중앙이 설립한 조직을 활용할 경우에는 관련 부처와의 연계협력 모색이 필요할 수 있음

3) 관련 기관이 컨소시엄 구성

- 전라북도 관련부서와 관련 출연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설립
 - (전라북도 혁신도시팀) 혁신도시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추진, 정주여건 개선 업무 담당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창업과 기업의 육성 및 경영안정 자금지원, 기억 혁신역량 강화, 기업 경영개선 컨설팅 등 업무 담당
 - (전북테크노파크) 사업화 및 기술창업 지원, 창업보육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교육, 혁신도시 특화산업 R&D 지원, 기업 역량강화 등 업무 담당

2.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재단법인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사업범위)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2.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입주기관(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3.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4.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5.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6.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7.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8. 혁신도시 성과 공유 등을 위한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9. 혁신도시법 제5조의2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
10. 그 밖에 혁신도시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4조(정관) 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출연금 및 기금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구성·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
8. 예산 및 결산
9. 정관의 변경
10. 기본재산의 처분
11. 센터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라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이사회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센터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6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법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대표 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및 감독한다.

② 센터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7조(수익사업) 센터는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행정지원)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직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원조달)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

1. 정부 및 이전공공기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전라북도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11조(기금조성) 혁신도시 발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① 센터는 법령과 자치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사, 재정, 회계, 사무처리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혁신도시 사업 추진 및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공간의 사전 활용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공간의 특성 반영
 - 복합혁신센터 내부의 공간이고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용도의 공간이라는 특성 고려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공간이 56.41㎡로 다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음(강원 1,300㎡, 부산 200㎡, 대구 200㎡)
-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
 - 이전공공기관 이전기술을 이용하여 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에게 창업 준비공간으로 제공
 - 우수한 아이템에도 불구하고 창업공간 마련이 어려운 1인창업 및 소규모 창업의 공간으로 활용
 - 창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업무 및 제품제작을 위한 작업 공간으로 활용

V.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

1. 연구 결과

1)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필요성

- 혁신도시를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즌2를 종합적으로 추진 하면서 혁신도시 관련 통합업무의 중심주체의 역할을 할 컨트롤타워 필요
-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 그리고 지역 내 관련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전국의 혁신도시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개발의 과제를 선도할 역할 필요

2)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1)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

- 이전공공기관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기업, 연구기관, 혁신인력 등의 유치와 이를 토대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시키는 역할을 수행
- 혁신도시 시즌2 전략의 유기적 연계 추진과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총괄 관리와 함께 혁신도시 주변과의 연계로 전북 전역으로 성과 확산과 분배 역할 수행

(2)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기능

-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화발전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등의 시즌2를 위한 사업 추진
- 혁신도시라는 도시공간의 관리와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의 관리와 더불어 혁신도시 내의 기관과의 협력과 함께 혁신도시간 연계협력의 네트워크 기능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3) 지역경제 파급효과

-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전북에는 생산유발 4,249백만 원, 부가가치유발 2,786백만 원, 취업유발은 18명의 경제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됨

4)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방안

(1) 설립 형태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절차를 진행함
- 우선적으로 도내 출연기관을 선정하여 공공위탁 방식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후에,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고 혁신도시 기관 등의 수요분석을 통하여 재단법인으로 전환을 검토함

(2) 기구 및 조직(안)

- 공공위탁방식으로 운영하되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기구 및 조직을 1단계(초기단계) → 2단계(안정화단계) → 3단계(성장단계)의 단계별 조직의 확대 운영으로 계획함
- 최종적으로 성장단계에서는 정책기획팀 4명, 혁신도시육성팀 5명, 혁신도시기업지원팀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 단계별 운영에 필요한 예산규모는, 1단계에서 인건비와 사업비 및 기타 운영비를 포함하여 218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2단계에서는 466백만 원이, 3단계에서는 88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됨

5)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자립화 방안

(1)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이 공동설립

-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발전의 공동 주체자로서 역할을 유도하여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이 공동투자를 통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함
-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이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운영비를 공동으로 출연함

(2) 임대공간 조성으로 임대수입 활용

-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의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에 따른 금융 및 자산관리 기관의 입주 수요와 다른 이전공공기관과 연관기업들의 입주수요가 발생하게 됨
- 전북개발공사가 혁신도시 연관기업들의 입주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운영관리함으로써 운영수익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운영비로 활용함

(3) 공공시설 관리사업 위탁

- 혁신도시에 조성되는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 수요를 위한 공공시설 내의 주민편의를 위한 이용시설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

(4) 자립운영 위한 제도개선 제안

- 국토교통부가 출연·출자하여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재단설립의 용이성을 확보함
-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강화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과정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혁신도시계정을 신설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함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국토부가 공모방식으로 전국 혁신도시에 사업과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함

2. 정책 제언

1)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 제도 개선 제언

- 혁신도시 개발은 불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많은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도시공간의 조성 및 관리와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게 됨
- 혁신도시의 성과공유를 위한 기금설치의 의무화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혁신도시계정을 신설의 움직임과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한 국책연구기관의 결과 등에 따라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수반되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2)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의 단계적 추진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당위성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점에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하기 보다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설립 및 운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하더라도 단계별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면서 사업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단계별 진행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진행함

3) 이전공공기관의 상생발전 참여 여건 마련

- 이전공공기관의 성과창출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유관기관 및 연관기업과 반드시 협력해야 하고, 그러한 성과를 지역과 함께 공유하여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상생발전하는 모델을 마련해야 함
-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상생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이전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